

의안번호	2212898
의 퇴 인	윤재옥의원
회 답 일	2025. 9. 19.
추계번호	25B5066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5 (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) 신설	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보험등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제3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5 (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(안 제19조의5)
 -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¹⁾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유상운송보험”)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, 유상운송보험 가입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으로,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 경감 조치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식,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의 종류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조치의 내용 및 정부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조치의 내용 및 사업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보험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현황(2024년말 기준)

(단위: 만명, %)

총 종사자 수(A)	유상운송보험 가입자 수(B)*	유상운송보험 가입률(B/A)
32.06	14.53	45.3

*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보험 및 시중보험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수를 합한 수치임
자료: 보험개발원, 배달서비스공제조합

1)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수는 9개사이고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의 수는 기업 내부정보로 확인이 어려우며 관련 통계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

[표 2]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(종합보험) 최초 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

구분	보험사 평균 ¹⁾	공제 상품 ²⁾
보험료 (연간)	약 220만원	121만원

주 1) 보험사 평균 : 이륜차 보험 온라인(다이렉트) 보험료('24.09.23.) 기준

2)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공제상품 : 월 단위 상품으로 가입후 1년간 무사고 가정 연간 예상 보험료임
자료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4.9.30.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